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2가단1156 판결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효승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구례등기소
2018. 4. 13. 접수 제2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82. 4. 12. 혼인하였는데, C가 2017. 12. 20. 집을 나간 후 서로 별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19. 4. 12. C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20. 10. 14.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드단11437)을 선고받았고, 이에 C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21. 7. 13.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광주가정법원 2020르4552)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각별한 사이로 원고의 위 재산분할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 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참조), 피고가 C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